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안	3 - 225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6.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농어촌 주민의 약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라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안 제3조)
-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다.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상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용·관리의 일보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안 제23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 차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사용자협의회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사용자들이 선출한 대표를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지정 및 유지관리

제4조(시설의 지정)①대표자는 마을주민의 음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수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모급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고, 사후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13의2호의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등)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개·보수를 시행하과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사용자 부담비용을 포함), 사업기간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은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골 인하여 간이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지)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4조(요금징수)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①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계량기)①관리자는 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 4 장 사 용 자 협 의 회

제17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 대표자는 협의회 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
게 통보
4. 시장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최한다.

1. 시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협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시장은 제2조제4호에 의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8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